

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기관명		
	대표자		법인등록번호
	소재지	본사	(전화번호:)
		해외 사무소 (해당하는 경우)	(전화번호:)
	설립 근거		
	설립 목적		
	설립 연월일		
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3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지정서 발급 → 통보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토교통부